

제3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

소 집 자	재활공학연구소장	제 출 자	운영지원부장	기 록 자	고객지원반 담당
일 자	2014.7.8(화) 16:00 ~ 18:00				
장 소	2층 소회의실				
출석위원	위 원 장	재활공학연구소장			문 무 성
	위 원	운영지원부장			이 형 석
		재활보조기술연구팀장			김 신 기
		재활치료훈련연구팀장			류 제 청
		직무지원기술연구팀장			이 석 민
		제작실장			차 정 증
배 석 자	배 석 자	상용화기술지원센터장			송 점 식
결석위원	위 원	시험검사센터장			최 기 원
심의안건	제2014-31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요청(안)				

주요 회의 내용

- (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금액 조정) 기존 재활보조기구 품목에 대하여 수리료가 위팔 의지 소켓 등 95건 등재되어 있으나,
 - 국산 재료의 개발, 재료단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무릎관절의지 무릎관절장식교환(타47-2)에 대한 수리 수가를 현실화 하고자 함
 - 그러나 무릎관절의지 무릎관절장식교환(타47-2) 등 5건에 대한 수리료 금액 조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없어 수리건수 추세를 검토 후 적정단가를 산정하도록 협의
- (재활보조기구 수리료 품목 등재) 기존 재활보조기구 품목에 대하여 수리료가 위팔 의지 소켓 등 95건 등재되어 있으나,
 - 최근, 대퇴보자기 지급 및 스타키넷 교환 등의 건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가 항목 신설을 통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
 - 그러나 대퇴보자기 등 5건에 대한 수리료 관련 품목의 등재로 인한 기대효과가 미미하여 수리건수 증가 추세 검토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활보조기구 수리 항목에 대하여 추가 등재하도록 협의
- (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관련 내구연한 산정) 재활보조기구 수리 품목의 내구연한을 1년으로 산정할 경우,
 - 재활보조기구 장착 후 내구연한 도래시점 이전에 A/S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부담금 발생
 - 이에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수리 및 교체 평균 기간을 전수조사하여 적정 내구연한을 추후 일괄 산정하도록 협의